

● 제333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 3271)**

2025. 11. 28.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인제 의원 발의】

의안번호 3271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안자 : 김인제 의원(찬성 20명)

나. 발의일자 : 2025년 10월 20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2. 제안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치매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입법 경제성과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주민 이해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제3조)
- 나.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 (안 제5조)
- 다.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사업 규정(안 제7조)

라.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2025. 10. 28. ~ 2025. 11. 1.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전부개정안의 개요

- 현재 서울시의 치매 관련 조례는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 동 전부개정(안)은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치매 관련 조례들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정비하여 입법 경제성 및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나아가 주민의 조례 이해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전부개정(안)은 12개의 본칙 조문과 3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칙	제8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운영) 제9조(운영의 위탁) 제10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부 칙
제6조(실태조사)	제1조(시행일)
제7조(지원 사업)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경과조치)

2 검토의견

1) 이원화된 서울특별시 치매 관련 조례 통합 필요성

- 현재 서울시의 치매 관련 조례는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음.
- 그런데, 2024년 조례 제정을 통해 이미 서울시 치매 관련 일반 조례인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별개로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해 ‘한정적 사항’만을 규정하는 조례가 별도로 존재할 실익이 적다고 사료됨.
- 아울러, 타 광역지자체(14곳)도 이미 ‘치매 관련 일반 조례’에 ‘광역치매센터’ 관련 내용을 ‘하위 조문’으로 구성하여 통합 운영중이며, 현재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3곳)만 ‘치매 일반 조례’와 ‘광역치매센터 조례’로 이원화하여 운영중이라는 점도 참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 (통합 조례 운영) (14곳)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 (이원화된 조례 운영) (3곳) : 서울, 전북, 제주

-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p.17)’에서도 “여러 자치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아울러서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음.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17)

자치법규를 정립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더라도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는 자치법규가 있어 그 자치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혀 새로운 분야를 규율하거나 기존의 여러 자치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아울러서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컨대 입법정책을 실현하는 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어느 쪽이 입법 경제적인지, 어느 쪽이 법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지, 어느 쪽이 주민의 자치법규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 따라서, 동 전부개정(안)과 같이 서울시 치매 정책과 관련한 여러 자치법규를 하나로 통합·재정비하는 것은 그 입법의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되며, 특히 주민의 자치법규 이해 편의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됨.

2) 주요내용 검토

① 제3조 (시장의 책무) 검토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동 전부개정(안) 제3조에 명시된 ‘책무 규정’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치매관리사업’ 관련 ‘책무 및 노력 규정’의 취지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 및 취지가 ‘상위법’에 반하거나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99)

시장 등의 책무·책임·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의 표현방식은 그 자치법규의 내용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그 자치법 규와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표현이나 내용이 서로 모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검토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검토의견) 동 전부개정(안) 제4조는 “다른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동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동 전부개정(안)이 ‘서울시 치매정책’과 관련해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조례’라는 점에서 그 조문 입법 방식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99)

1) 다른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

그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 조례를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방식이다. 조례가 기본조례의 성격이나 일반조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특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특별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그 조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 두는 방식이다.|

입법례 ◎ 「보령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8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운영) 검토

제8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운영) 시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치매 관련 대책 수립 및 치매관리사업 기획
2. 치매관련 자원조사,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연계 및 기술지원

- 3. 치매관련 종사자 전문교육 · 훈련
- 4. 치매관련 연구사업
- 5. 치매인식 개선사업
- 6.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지원
- 7.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
- 8. 법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 및 후견사무 지원
- 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 (검토의견) 동 전부개정(안) 제8조는 기존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업무)에 명시되어 있던 내용을 전부개정(안) 제8조에 그대로 이기한 것으로서, 동 전부개정(안)의 주된 입법취지인 ‘치매 관련 조례 통합·정비’에 부합한 개정이라 사료됨.

④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검토

- 제10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 기구 · 장비 · 시설 및 기술 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업수행 능력 및 실적
 3. 책임능력 · 공신력
 4. 재정적인 부담능력

- (검토의견)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동법 제2항에 따라 치매 관련 전문성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
- 아울러,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제3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해야 함.
- 따라서, 동 전부개정(안) 제10조에 따라 향후 수탁을 원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에 참여하여 기관의 '전문성', '책임성', '공신력' 등을 입증 및 평가받은 후,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① 시 ·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운영 및 위탁)

-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

전 문 위 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신현태	02-2180-8145

의안번호
3271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인제 의원	2025.10.20.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매관리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시장으로 하여금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치매관리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광역치매센터의 위탁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p>※ 안 제8조~안 제10조는 기존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용으로 본 조례안 제정으로 기존 조례 폐지를 명시함(부칙 안 제2조)</p>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10.20. 조례안 개정 제안		
부 서 검 토 의 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치매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입법의 경제성과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현행 「치매관리법」 체계 하의 이원화된 관련 조례의 통합으로 주민 이해의 증진에 따른 정책 실효성 제고가 기대되는 바 동 조례안에 원안 동의함 <p>※ 현재 타 광역 자치단체(17개) 중 14개소는 통합 조례로 운영하고 있으며, 3개소(서울·전북·제주)만 이원화된 조례 운영 중</p>		
대응 방안			
상 임 위 처 리 결 과			
향후 계획			
담당부서	정신건강과	팀장	서하나(☎2133-7581)
		담당	민영란(☎2133-7555)